

# 海洋汚染防止法의 解說

檢査理事 咸 在 脩

## 1. 海洋汚染의 現狀

最近顯著한 產業經濟의 發展과 國民生活의 向上에 따라 急速히 增大한 原油, 重油等의 海上輸送의 過程에 있어서 船舶으로부터 排出되는 기름, 沿岸의 埋立地에 位置한 臨海工業 等으로부터 排出되고 있는 廢液等이 顯著하게 增加하고 또 多은 量의 產業, 生活廢棄物質 等이 安易하게 海洋에 投棄되어 왔다는 點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周邊海域에 있어서 汚染은 急激하게 廣域的으로 進行되어 社會問題化되어 가고 있는 現實이다.

특히 最近에는 水銀, PCB等에 依한 汚染問題는 國民의 日常生活에 直接 威脅을 주는 問題로 發展되어 가고 있으며 國民에게 크나큰 不安을 줌과 同時 海洋汚染問題가 人類의 生存과 發展을 이룩하는 見地에서 앞으로 진지하게 檢討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立證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海洋의 汚染은 國際的으로 問題화 되여 1973年 10月에 開催된 IMCO主催(英國 倉庫)의 國際會議에 있어서 「1973年의 船舶으로부터의 汚染의 防止를 為한 國際條約(假稱)」이 採擇되어 從來의 國際條約의 內容에 比하여 海洋의 汚染防止를 為한 規制가 加一層 嚴하게 되었고 또 1974年 6月부터 「카라카스」에서 開催된 第3次 國聯海洋法會議에 있어서도 海洋汚染防止 zone의 設定等에 關한 事項이 討議되는 等 海洋의 汚染防止對策은 더욱더 全世界的規模로 推進할 問題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重要性을 認識하고 法規制의 整備와 一連의 海洋汚染防止法等을 積極的으로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1980年 2月 29日 海洋警察隊에서 海洋汚染放

棄를 為한 業務協助, 公翰內容을 檢討한바 海洋汚染防止法 第40條에 依據 79年 10月부터 實施하고 있는 船舶 및 關聯業體出入檢查結果分析된 問題點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海洋汚染防止法에 對한 認識不足으로 因한 違法

둘째 : 出入檢查 受檢態勢未備

셋째 : 海洋汚染發生防災對策未備

以上과같은 問題點으로 아직 船舶의 所有者들께서는 海洋汚染防止法이 어찌한 骨子로 어떻게 規制되어 있는가를 認識하지 못한 것으로 生覺되어 여러분들에게 多多少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海洋汚染防止法에 對한 解說을 記述코자 함.

## 2. 海洋汚染防止法의 解說

### 1. 目 的(法 第1條)

이 法은 船舶 및 海洋施設等에서 海洋에 排出하는 기름 또는 廢棄物을 規制하고 海洋의 汚染物質을 除去하여 海洋環境을 保全함으로써 國民의 健康과 財產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 2. 定義(法 第2條)

(1) 기름 : 기름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原油

· 重油 : (韓國工業規格 KSM 2614, A 重油  
1號)

· 潤滑油 :

· 上記의 기름을 含有하는 油性混合物

(2) 廢棄物 : 人이 必要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기름除外)을 말한다. 기름을 제외한 理由는 기름에 對해서는, 그 排出에 關해 別途로 規制하고 있기 때문이다.

(3) 排出：기름, 廢棄物 또는 鑛滓等을 海洋에 漏出, 流出 또는 投棄하는 것을 말한다.

(4) 瞬間排出率：어느 時點에 있어서 時間當에 依한 기름의 排出速度를 그 時點에 있어서의 ネ트에 依한 船舶의 速力으로 나눈 값

(5) 船舶：海洋에서 航行의 用途에 使用되는 船舟類를 말한다.

浮遊性, 積載性 및 移動性을 가진 構造物이라면 自航, 被曳航別不問

(6) 油槽船：그 貨物艙의 大部分이 散積하는 液體貨物의 輸送을 為한 構造를 가지고 있는 船舶을 말한다.

따라서 散積하는 기름의 輸送의 用途에 쓰여지는 船舶은 모두 本法에서 말하는 油槽船으로 取扱된다. 더욱 輕油, 重油等, 本法에서 規定하는 기름以外의 油性物만을 輸送하는 船舶은 本法의 油槽船에는 該當되지 않는다.

(7) 海洋施設：海域에 設置되는 構造物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固定施設에 依하여 當該工作物과 陸地와의 사이를 사람이 往來할 수 있고 또 陸地로부터 기름 또는 廢棄物을 排出하기 為하여 陸地에 接續하여 設置된 것은 除外한다로 되어 있다.

具體的으로는 다음에 揭記하는 工作物이다.

(가) 사람을 收容할 수 있는 構造를 가진 工作物

(나) 物件을 處理, 輸送 또는 保管의 用에 供하는 工作物

따라서 sea base, 石油掘削塔, 燈標, 海中居住基地等의 사람이 作業을 한다든가 居住한다든가 하는 工作物은 海洋施設이다.

또 海域에 設置된 物件의 處理場, pipe line과 같은 輸送하기 為하여 設置된 工作物, 海中倉庫와 같은 保管을 為한 施設도 海洋施設이다.

(8) 船底廢水：船舶의 밑바닥에 고인 油性混合物

(9) 廢油：船舶內에서 生긴 기름으로써 그 狀態로는 쓸 수 없게 된것을 말한다.

(10) 廢油處理施設：廢油의 處理를 目的으로 設置된 施設

다만 船舶內에서 生기는 廢油은 自體處理하는 施設은 除外한다.

(11) 廢油處理事業：廢油處理 施設에 依하여 廢油處理를 業으로 하는 것.

自家用의 廢油處理만을 할 時에는 廢油處理事業이 아니다.

또한 「海域」 및 「海洋」에 關한 定義가 없는데 海域이라함은 바다의 넓이를 잡은 概念으로 그範圍는 海面 및 上下에 미치고, 海洋이라 함은 海水, 水產動植物 海底地形 等을 包含한 實存하는 바다 그것을 말한다.

海域 및 海洋의範圍는 社會通念上 具體的으로는 陸地와의 境界는 最高滿潮線을 그 接點으로 生覺하는 것이 適當하다.

또한 海域은 領海法의 規定에 依한 領海 및 內海로 한다고 되어 있다(大統領令 第4條)

### 3. 船舶으로부터의 기름의 排出規制에 對하여(法 第2章)

(1) 船舶에서의 기름 排出禁止(法 第5條)

原則적으로는 「누구든지」「全海域」에서 「全船舶」에서 기름의 排出이 禁止되어 있다(法 第5條-1) 但 다음의 境遇 即 緊急避難 또는 不可抗力의 境遇 또는 一定한 條件에 따라例外의 으로 排出시킬 時는 認定하고 있다.

(가) 緊急避難 또는 不可抗力의 境遇

① 「船舶의 安全을 確保하기 為하여」「船舶 또는 積荷의 損傷을 防止하기 為하여」

또는 「人命을 救助하기 為한」 기름의 排出(法 5-①-1)

② 船舶의 損傷 · 其他不得已한 原因而 依해서 기름이 排出하였을 때에 排出되는 것을 防止하기 為하여 可能한 모든 措置를 取하였을 境遇의 기름의 排出(法 5-①-2)

(나) 一定한 條件에 따랐을 境遇는 船種別, 排出油의 種類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2) 船底廢水排出防止裝置(法 第6條)

船舶의 所有者는 總噸數 100t 以上의 油槽船 및 油槽船以外의 總噸數 300t 以上의 모든 船舶에 있어서는 當該船舶내에 所定의 船底廢水排出防止裝置를 設置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但 船舶安全法施行令 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依하여 航行區域이 定하여진 船舶에 있어서는 油水分離裝置, 漏水防止裝置 또는 船底廢水貯藏裝置로 한다.

기름의 배출조건

기 름 수 총 수 종 수		화물창에서 배출하는 물 ballast 및 세정수	선 저 폐 수	파란·중란 이외의 기름
유 조 선	총 톤 수 1 0 0 톤  이 상 의 선 박	<p>다음의 모든 조건에 적합한 경우</p> <p>① 항해중 일 것</p> <p>② 유분의 순간 배출율이 1해리당 60리터 이하일 것</p> <p>③ 1회의 항해중(물 ballast의 적재를 시작할 때부터 그 물 ballast의 배출을 완료할 때까지를 말한다)에 배출되는 유분이 총화물선 적재용적의 15,000분의 1이하일 것</p> <p>④ 영해의 기선으로 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할 것</p> <p>또한, 이 조건에 더하여, 정지중인 유조선이 화물창으로 부터 맑고 평온한 해수에 물 ballast 을 배출한 경우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막이 해면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세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화물창에서의 물 ballast의 배출을 인정한다.</p> <p>(법 5—④) (법 5—⑤)</p>	<p>다음의 모든 조건에 적합한 경우</p> <p>① 항해중 일 것</p> <p>② 유분의 순간 배출율이 1해리당 60리터 이하일 것</p> <p>③ 배출되는 기름중의 유분이 100ppm미만일 것</p> <p>④ 가능한 한 육지 또는 도서에서 멀리 떨어져 행할 것</p> <p>(법 5—②) (법 5—③)</p>	배출금지
유 조 선	총 미 톤 수 의 1 선 0 0 톤	맑은날에 정지중인 유조선의 화물창에서 배출하는 물 ballast의 세정도의 기준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막이 해면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세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화물창에서의 물 ballast의 배출을 인정한다. (법 5—⑤)	가능한한 육지 또는 도서에서 멀리 떨어져 배출할 것 (법 5—③)	배출금지
유 조 선 이 외 의 선 박	총 톤 수 300 톤 이 상 의 선 박		유조선에서 100톤 이상의 선저폐수 배출 조건과 동일하다 (법 5—②) (법 5—③)	
유 조 선 이 외 의 선 박	총 톤 수 300 톤 미 만 선 박		가능한한 육지 또는 도서에서 멀리 떨어져 배출할 것 (법 5—③)	
포 경 선		작업중인 경우의 기름배출은 이를 적용치 않으나, 포경선이라도 포경작업중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의 조건 하에 배출할 것		

船底廢水排出防止裝置概要說明圖

종류	유수 분리 장치	누유 방지 장치	선저 폐수 저장 장치
개요설명	<p>선저에 모이는 선저 폐수(유성혼합물)을 기름과 물로 분리하여, 물만 선외로 배출한다.</p>	<p>선저에 기름의 유입을 방지한다. 그 결과 선저에는 해수만 고이고 이것은 직접 선외로 배출해도 좋다.</p>	<p>항로가 한정되어진 선박에만 인정한다. 선저폐수를 일정한 기간 선박내에 저장하고, 폐유처리 시설로 보낸다.</p>
기준	<p>1) 성능 : ① 기름 함유량을 그 유수분리기로부터의 배수 <math>10,000\text{M}^3</math>마다 <math>1\text{cm}^3</math> 미만으로 할것.      ② 임의의 방향으로 <math>15^\circ</math> 경사된 상태에서도 그 성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      ③ 검사와 청소가 용이하고 선저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p> <p>2) 처리능력      ① 총톤수 1,000톤 미만 일때 <math>0.00044G \text{ M}^3/\text{h}</math>(여기서 G는 총 톤수)      ② 총톤수 1,000톤 이상 40,000 톤 미만일 때 <math>0.4 + 0.00004G \text{ M}^3/\text{h}</math>      ③ 총톤수 40,000톤 미만일 때 <math>2\text{M}^3/\text{h}</math></p>	<p>1) 기름받이      ① 금속제 일 것.      ② 선박이 종방향으로 <math>10^\circ</math> 또는 횡방향으로 <math>15^\circ</math>까지 경사된 경우에도 기름이 누출되거나 비산하지 않는 구조일 것      ③ 기름을 드레인 탱크 또는 코파emm에 이송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p> <p>2) 기름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치 밑에는 기름받이를 비치할 것</p> <p>3) 벨브, 콕크에 접속하는 관은 기름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p>	<p>1) 내용적 : 당해 선박의 항행구역 및 항행속력을 고려하여 당해 선박의 소재지 지방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기준치 이상의 내용적 이어야 한다.</p>

船底廢水排出裝置의 種類 및 機能은 上記圖表와 같다

### (3) 기름排出防止管理人(法 第 7 條)

船舶所有者는 船舶마다 그 船舶의 乘務員中에서 船長을 補佐하여 기름의 排出防止에 關한 業務를 管理하기 為하여 一定한 資格을 갖춘 기름排出防止管理人을 選任하고 業務內容, 遵守事項其他 必要한 事項은 交通部令으로 定하게 되어

있다.

(가) 기름 排出防止管理人의 資格(交通部令 第 7 條)

① 船舶職員法 第 7 條의 規定에 依한 海技士 免許를 받을 것

② 油槽船에 乘船하여 기름에 關係되는 作業에 1年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거나 또는 油槽船以外의 船舶에서 機關業務에 3年以上 從事한 經歷

## 이 있는 자

### (4) 기름 排出防止管理人의 業務內容

① 船底廢水排出防止裝置, 其他 기름의 不適正한 排出防止를 為한 機器의 取扱, 檢查 및 整備에 關한 事項

### (2) 기름 記錄簿에 關한 事項

③ 기름 排出時 關係機關其他 關係者와의 連絡에 關한 事項

### (4) 廉油處理施設의 利用에 關한 事項

⑤ 기름의 不適正한 排出의 防止를 為하여 船員이 遵守할 事項의 周知 및 教育에 關한 事項

(4) 다음의 境遇에는 기름의 不適正한 排出을 防止하기 為해서 措置를 遵守하여야 한다.

### ① 貨物油의 積載 移送 및 揚荷

② 貨物油탱크의 물밸리스트의 積載 및 當該 탱크로부터의 排出

### ③ 貨物油탱크의 洗淨

### ④ 스톰탱크로부터의 물의 排出

⑤ 貨物油 탱크 및 燃料油탱크의 殘溜物의 處分

### ⑥ 船底廢水의 排出

⑦ 事故 其他의 事由로 因한 例外的인 기름의 排出

### (4) 기름記錄簿(法 第8條)

기름의 排出 및 기름에 關한 作業이 適正하게 實施되고 있는가를 確認하기 為해서 總噸數 100 \$以上의 油槽船 및 總噸數 300 \$以上의 船舶의 船長은 기름記錄簿를 船舶內에 備置하여야 한다 다만 被曳引船의 境遇에는 船舶所有者的 事務室

A 선박내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지정해역(대통령령 제6조)

폐기물	처리방법	
	제 1 해 역	제 2 해 역
1. 휴지, 나무 조각, 섬유조각, 폐 프라스틱류, 기타 가연성 쓰레기(음식물 찌꺼기를 제외한다)	1. 강열감량 15퍼센트 이하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2. 비중 1.2이상의 상태로하여 배출할 것 3. 분말상태로 배출하지 말 것 4. 선박의 항해중(해수속도 3노트 이상의 속도로서 항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출할 것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할 것
2. 공병, 공관 기타 금속조각, 유리조각 도자기류 조각	1.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배출할 것 2. 선박의 항해중에 배출할 것	1.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배출할 것 2.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할 것

에 備置하여야 한다.

## 4. 船舶으로부터의 廉棄物의 排出의 規制에 대하여(法 第2章)

### (1) 船舶으로부터의 廉棄物의 排出禁止

原則으로 「누구든지 全海域에 있어서 全船舶로부터의 廉棄物의 排出이 禁止」되어 있다.

但, 다음에 記述하는 緊急避難 또는 不可抗力의 境遇와 一定의 條件에 따랐을 境遇에는 例外的으로 排出이 認定되고 있다.

### (2) 緊急避難 또는 不可抗力의 境遇

#### ① 「船舶의 安全을 確保하기 為하여」

「船舶 또는 積荷의 損傷을 防止하기 為해」 또는 「人命을 救助하기 為한」 廉棄物의 排出.(法 第10條)

② 船舶의 損傷 其他不得已한 原因에 依하여 廉棄物이 排出된 境遇에 繼續 排出되는 것을 防止하기 為해서 可能한限 모든 措置를 취하였을 때의 廉棄物의 排出(法 第10條)

(4) 一定의 條件에 따라 排出하는 境遇 및 廉棄物의 發生別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A 船舶에서 生기는 廉棄物을 海洋에 排出하는 境遇(法 第10條)

B 陸上에서 生기는 廉棄物을 船舶(廉棄物排出船)에 依해 運搬하여 排出하는 境遇로서

B-1 埋立場所等에 排出하는 境遇(法 10-③)

B-2 特定海域에 排出하는 境遇(法 10-④)

以下 A 및 B에 對하여 廉棄物의 種類別로 排出方法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3. 음식 물 씨거기	1. 마쇄하여 배출할 것 2.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
4. 분뇨	1. 분을 마쇄하여 배출할 것 2. 수중에 깊이 배출할 것 3.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

1. 통상 탑재 인원 50명 이상의 선박에 적용
2. 제 1 해역은 다음의 해역으로 한다.
  - (가) 항만법에 의한 항만의 경계선으로부터 밖으로 10,000미터까지의 해역
  - (나) 국토 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의 경계선으로부터 밖으로 10,000미터까지의 해역
  - (다) 선박 안전법 시행령 제 2조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10,000미터까지의 해역
  - (라) 위 가, 나, 다 이외의 해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축적 해도에 표시된 저 조선으로부터 10,000미터 이내의 해역
3. 제 2 해역은 제 1 해역과 항만구역 및 수산자원보전 지구를 제외한 해역으로 한다.

#### B-1 공유수면매립에 있어서의 폐기물 처리방법(대통령령 7조)

1. 호안시설등을 설치하여 해역과 차단한 후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처리방법(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호안시설 설치상태는 폐기물 또는 해수등이 호안시설 등의 내면에서 해역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차단할 것.
- 나. 매립시 시멘트로 고형화 하는 경우의 기준
- (1) 결합제는 수경 시멘트를 사용하고 그 배합량은 콘크리트 1m<sup>3</sup>당 150kg 이상일 것
  - (2) 1축의 압축강도는 10kg/cm<sup>2</sup> 이상일 것
  - (3) 형상 및 크기
    - (가) 부피(cm<sup>3</sup>)와 일면의 표면적(cm<sup>2</sup>)의 비가 1이상일 것
    - (나) 변의 길이는 최대와 최소의 비가 2이하일 것
    - (다) 최소변의 길이는 5cm이상일 것

폐기물	처리방법
(1) 수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것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 시멘트로 고형화하여 배출할 것. (나) 폐기물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용기에 넣어 배출 할 것.
(2) 폐산, 또는 폐알카리중 수은이나 그 화합물 또는 P.C.B를 함유한 것.	폐기물이 유출되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용기에 넣어 배출 할 것
(3) 유기성 폐기물중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 연이나 그 화합물, 유기인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비소나 그 화합물을 함유한 것	(가) 강열감량 15퍼센트 이하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나)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배출할 것
(4) 폐산 또는 폐알카리중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 연이나 그 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을 또는 비소나 그 화합물을 함유한 것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5.0이상 9.0이하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5) 폐기물중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 연이나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또는 비소나 그 화합물을 함유한 것 또는 유해 수저 토사	당해 폐기물의 한층의 두께는 2미터 이하로 하고, 각 층마다 그위에 토사를 50센티미터 이상 덮어 매몰할 것

2. 제 1호 이외의 공유수면 매립에 있어서의 폐기물 처리 방법
  - 가) 폐기물이 해역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배출
  - 나) 액상폐기물 또는 수용성 폐기물은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5.0~9.0으로 조정하여 배출.

- 다만, 호안시설 등으로 매립장소와 해역이 차단될 경우는 그러지 아니해도 좋다.
- 다) 유성폐기물은 소각하여 배출한다.
- 라) 폐산, 폐알카리 또는 오니중 시안화합물의 혼합물은 함양 IPPM이하로 하여 배출한다.
- 마) 폐전자제품중 PCB부품은 빼어내고 배출한다.

#### B-2 산업폐기물 등의 처리방법과 지정해역(대통령령 8조)

1. 지정해역은 갑, 을, 병, 정, 무의 해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제 8조-②)으로 규정되어 있다.

#### 2. 처리방법 및 지정해역

[별표 4]

폐기물	처리방법	지정해역
1.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및 준설 또는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수저토사중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연 및 그 화합물, 유기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이 함유된 오니	가. 비중 1.2 이상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나.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과 시안화합물의 경우에는 이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 후 시멘트로 고형화하여 배출할 것 (1) 수은 및 그 화합물은 0.005mg/l이하 (2)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은 0.1mg/l이하 (3) 시안화합물은 1PPM이하 다.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것	“갑”해역에서 배출할 것
2. 집중식 처리대상 폐기물 가. 총포화약류 단속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중 폐화약류 나. 가연성 폐기물(폐화약류를 제외한다)을 강열감량 15퍼센트이하로 소각한 것 다. 불연성의 폐기물(오니 및 분뇨를 제외한다) 라.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생기는 쟈(강열감량 15퍼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마.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생기는 금속 조각(PCB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바. 광재	가. 비중 1.2이상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나. 분말의 상태로 배출하지 아니할 것 다.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것	“을”해역에서 배출할 것
3. 확산식 처리 대상 폐기물 가. 불연성의 폐기물(오니 및 분뇨를 제외한다) 중 액상의 것 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생기는 폐산 또는 폐알카리로서 선박에 적재할 때의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5.0이상~9.0이하의 상태로 할것	가. 수중 깊이 배출할 것 나.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할 것	“병” 해역에서 배출할 것
4. 수송 어로활동 기타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폐기물중 강열감량 15퍼센트 이하로 처리한 폐기물과 무기성의 폐기물(수저토사를 제외한다)	가. 비중 1.2이상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나. 분말의 상태로 배출하지 아니할 것	“병” 해역에서 배출할 것
5. 수송 어로활동 기타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폐기물중 식물성의 것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할 것	“병” 해역에서 배출할 것

(나무조각에 있어서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분쇄하거나 결단한 것에 한한다)		
6. 수송 어로활동 기타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폐기물중 동물성의 것과 동활동에 따라 생기는 오수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창의 세정수	처리방법은 한정하지 아니한다.	“정” 해역에서 배출할 것
7. 오니 또는 분뇨로서 황산 제1철 또는 염화 제2철을 0.1퍼센트 이상 혼입하거나 파쇄한 것	선박의 항행중에 수중 깊이 배출할 것	“정” 해역에서 배출할 것
8. 준설 또는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수저토사(유해 수저토사를 제외한다) 및 수송, 어로활동 기타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오수. (위 제6호의 화물창의 세정수를 제외한다)	가. 수저토사에 있어서는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것 나. 오수는 처리방법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무” 해역에서 배출할 것

(주) 1. 해양투기시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의 기준  
 (1) 결합제는 수경시멘트로 할 것  
 (2) 1축의 압축강도는  $100\text{kg/cm}^2$ 이상일 것  
 (3) 형상 및 크기  
     (가) 부피( $\text{cm}^3$ )와 일면의 표면적( $\text{cm}^2$ )의 비가 5이상 일 것  
     (나) 변의 길이는 최대와 최소의 비가 3이하 일 것  
     (다) 최소변의 길이는 30cm 이상 일것  
 2. 강열감량 : 「강열감열」이라함은, 당해분석자료를 섭씨 105도로써, 4시간 동안 건조시켰을 때의 질량과 당해건조후의 자료를 섭씨 600도에 놓고 2시간 열을加強했을 때의 질량과의 감량분을 퍼센트로써 표시한 것이다. 즉 「강열감량 15퍼센트 이하의 상태」라 함은, 상기감량분이 15퍼센트 이하로 밖에 되지 않는것을 말하며 거의 완전 소각한 것이다.

## (2) 廢棄物運搬船의 登錄等(法 第11條)

가) 船舶所有者가 船舶을 廢棄物의 運搬에 常用하고자 할때에는 登錄申請書와 다음의 書類를添付하여 海運港灣廳長의 登錄를 訂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① 定款과 法人登記簿謄本(法人인 境遇에 限한다)

② 船舶의 設備 構造에 關한 書類

③ 其他 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書類

나) 廢棄物運搬船의 設備및 構造

船舶은 그 船舶의 設備와 構造가 技術上의 基準에 適合한 것에 限하여 登錄되며 다음 각號의 設備와 構造基準은 交通部令으로 定해져 있다.

① 크레인, 펌프, 개폐문, 其他廢棄物의 積載 또는 排出을 爲한 設備나 構造

② 貨物船其他 廉棄物을 積載하기 爲한 設備나 構造

③ 貨物船의 洗淨裝置

④ 本船의 位置를 測定하는 裝置

⑤ 當該船舶의 航行狀況 및 廉棄物의 排出狀況을 自動的으로 設錄하는 裝置

다) 登錄의 取消(法 第13條)

登錄된 船舶의 設備와 構造가 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3) 廉棄物處理記錄(法 第14條)

廉棄物의 排出作業이 適正하게 行하여 こ는가를 垫保하기 爲하여 法 第8條의 기록記錄簿에 關한 規定과 同一하게 廉棄物運搬船의 登錄을 받은 船長은 廉棄物處理記錄簿는 船舶內에 備置하여야 하며 廉棄物取扱에 關한 一定한 作業이 行하여 こ는 때는 그에마다 一定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5. 海洋施設로부터의 기름 및 廉棄物의 排出規制(法 第3章)

### (1) 海洋施設로부터의 기름 또는 폐棄물의排出禁止(法 第15條)

原則으로 누구든지 海洋施設로부터 기름 또는 폐棄물을 排出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의 緊急避難 또는 不可抗力의 境遇와 一定한 條件에 따른 境遇에는 例外的으로 排出하는 것이 認定되고 있다.

#### (가) 緊急避難 또는 不可抗力의 境遇

- ① 海洋施設의 安全을 確保하거나 損傷을 防止하거나 人命救助를 하기 為한 기름 또는 폐棄물을 排出하는 境遇
- ② 海上施設의 損傷其他 不得已한 原因에 依해 기름 또는 폐棄물이 排出된 境遇에 繼續 나오는 것을 防止하기 為하여 可能한 모든措置를 했을 境遇

#### (나) 一定한 條件에 따라서 排出하는 境遇

- ① 海洋施設內의 日常生活에서 生기는 폐棄物의 處理方法 및 特定海域에 關하여는 船舶內에서 生기는 폐棄物의 處理方法 및 特定海域과 同一하다.
- ② 기름 또는 法 第10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한 폐棄物의 排出方法에 關한 基準에 따라 排出하는 境遇(法 第15條)

기름에 있어서는 油分이 10PPM以下가 되도록하고 폐棄物에 있어서는 船舶에 積載한 다음에 法 第7條, 또는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排出할 것

### (2) 海洋施設의 設置登錄(法 第16條)

海洋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部長官 또는 海運港灣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6. 廉油處理事業等에 關하여(法 第4章)

廉油處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海運港灣廳長의 許可를 받아 廉油處理事業의 施設基準 및 廉油處理方法에 適合한 施設을 維持되도록 規定되어 있다.

## 7. 海洋汚染防除措置(法 第5章)

### (1) 大量의 기름이 排出되었을 境遇의 措置

여기에서 大量의 기름排出이란 船舶, 海岸施設, 陸上施設의 事故等에 因하여 濃度 1,000ppm以上의 기름으로 油分 100%以上의 것이排出되었을 境遇이고 그 境遇의 措置로서는 申告義務

務, 應急措置義務, 防除措置義務, 協力義務, 措置命令權措置에 쓰여진 費用의 負擔 等에 關해 定해져 있다.

#### (가) 申告義務

##### ① 申告義務者(法 第26條)

다음의 者는 多量의 기름排出이 있을 境遇에는 遲滯없이 內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기름을 排出한 船舶의 船長, 施設의 管理者 기름排出原因이 되는 行爲者

○廣範圍하게 기름이 海面에 퍼져 있는 것을 發見한 者도 申告의 義務가 있다. 그러나 排出 기름이 10,000m以上으로 擴散될 憂慮가 없는 境遇에는 그럴 必要가 없다.

#### (나) 應急措置義務(法 第27條)

다음의 者는 기름擴散防止策의 設置, 損傷個所의 緊急修理, 排出 기름의回收, 기름處理藥劑의 撒布, 殘有기름의 移積等의 기름防除를 為하여 現場에서 取할 수 있는 最大限의 有効適切한 應急措置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기름을 排出한 船舶의 船長, 施設의 管理者 기름排出原因이 되는 行爲者

#### (다) 防除措置義務

(나)項의 者에 의한 應急措置가 不充分한 境遇에는 다음의 者는 기름擴散防止策의 設置, 損傷個所의 緊急修理, 排出 기름의回收, 기름處理藥劑의 撒布, 殘有기름의 移積等 그外 其他排出된 기름의 防除를 為한 必要한 措置를 取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기름을 排出한 船舶의 所有者, 施設의 設置者, 기름排出의 原因이 되는 行爲를 한 者의 使用者

#### (라) 措置命令(法 第27條)

前述한 防除措置가 充分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될 境遇에는 內務部長官은 다음의 者에게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도록 命令을 할 수 있다.

○기름排出한 船舶의 所有者

○施設의 設置者

○기름排出原因이 되는 行爲의 使用者

#### (마) 防除資材備置의 義務(法 第28條)

다음의 者는 船舶內, 그外 其他所定의 場所에 交通部令으로 定해진것에 따라서 排出油의 防除를 為한 기름擴散防止策 또는 藥劑 그外 其他資

材를 備置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貨物油를 積載하는 總噸數 150\$以上의 油槽船所有者

○500\$以上의 기름을 保管할 수 있는 施設의 設置者

○貨物油를 積載하는 總噸數 150\$以上의 油槽船을 繫留할 수 있는 繫留施設의 管理者

(바) 内務部長官의 措置 및 費用의 負擔(法第30條)

○内務部長官은 大量의 기름이 排出된 境遇措置를 하여야 할 者가 그 措置를 아니하였거나 그 措置만으로 海洋의 汚染防止를 못하였을 때에는 關係機關의 協調를 얻어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이 境遇에 必要한 費用은 다음의 境遇를 除外하고 船舶所有者, 施設의 設置者에게 負擔시킬 수 있다.

- 戰爭, 事變, 其他不可抗力의 事由로 發生된 境遇

- 天災地變

(사) 財產의 處分(法 第31條)

○大量의 기름排出에 依해 海洋이 顯著하게 汚染되어 當該污染으로 廣範圍한 沿岸地域에 對하여 다음에 揭記하는 重大한 事態가 일어나는 境遇에는 内務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限度의 範圍內에서 船舶을 破壞하거나 燃却하거나 現場附近의 海域에 있는 第3者의 財產을 處分할 수 있다.

- 海洋環境保全에 相當한 障害를 주는 境遇

- 人の 健康을 害하는 境遇

- 財產上에 重大한 加害를 加하는 境遇

- 事業活動을 困難하게 하는 境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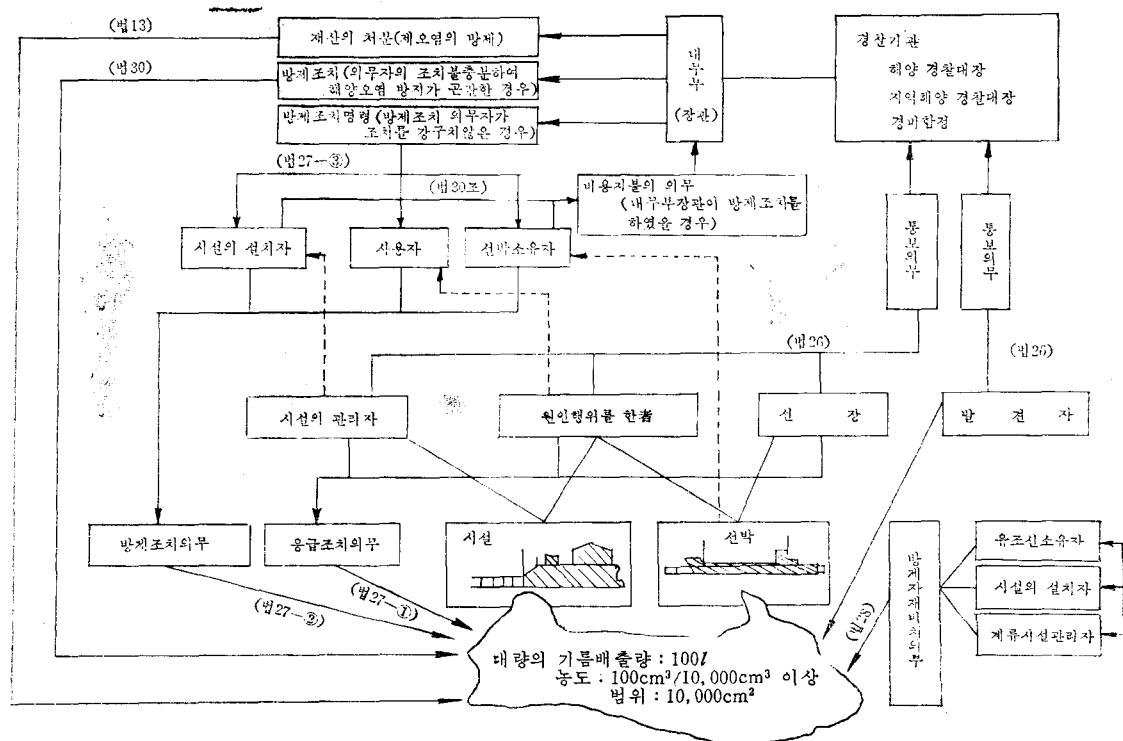
- 上記의 狀況이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

더욱 이것等에 關한 事項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2) 廢棄物等이 排出된 境遇의 防除措置

(가) 措置命令(法 第29條)

排出된 廢棄物 等으로 海洋이 汚染되어 海洋環境의 保全에 顯著한 障害가 있거나 障害가 미칠 憂慮가 있고 緊急하게 防除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内務部長官은 그 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 廢棄物等의 緊急防除를 為한 措置를 命



할 수 있다.

(나) 内務部長官의 措置 및 費用負擔(法 第30條)

그 命을 받은 者가 必要한 措置을 講究하지 않거나 그 措置만으로 不充分한 境遇는 内務部長官이 關係機關의 協調를 얻어 必要한 措置을 講究하고 그 措置에 必要한 費用을 請求할 수 있다.

## 8. 紛爭調整(法 第6章)

(1) 紛爭의 申請(法 第32條)

海域의 汚染으로 因하여 紛爭이 發生하였을 때 紛爭調整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해진 資料를 添付하여 海洋警察隊長을 거쳐 内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2) 調整委員會(法 第33條)

紛爭調整을 爲해 委員長은 内務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公益을 代表하는 者와 海洋科學, 船舶產業 또는 公衆保健에 關한 智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가 同數가 되도록 内務部長官이 任命하여 任

期는 2年으로 되어 있다.

(3) 調查委員의 指命 및 義務

(가) 調査委員의 指命(法 第34條)

調整申請이 있을 時는 調査委員中에서 5人 以内의 調査委員을 内務部長官이 任命한다.

(나) 調査委員의 業務(法 第36條)

調査委員은 紛爭調整中에 知得한 秘密을 漏泄해서는 아니된다.

## 9. 補則(法 第7章)

(1) 廢船의 規制

누구든지 船舶을 海洋에 버리는 것은 原則적으로 禁止되어 있다(法 第38條)

단, 水深 1,500m 以上의 海域에서 船舶內의 物質이 流出되거나 아니하고 또한 船舶의 全部나一部가 浮上하거나 移動하지 아니하도록 海底에 침강시키는 경우는 禁止되어 있지 않다.

## 10. 罰則(副添)

해상 오염 관계 법령 벌칙 일람표

법령명	조항	규제내용	벌칙		
			조항	징역	벌금
1. 해양오염 방지법	5조 1항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금지	49조 1항	5년 이하	2,000만원 이하
	6조	선저폐수의 배출 방지 장치	52조 1항		200만원 //
	7조	기름 배출 방지 관리인	53조 1항		50만원 //
	8조 1항 또는 14조	기름 기록부 및 폐기물처리 기록부의 비치	52조 2항		200만원 //
	10조 1항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 금지	49조 2항	5년 이하	2,000만원 //
	11조 1항	폐기물 운반선의 등록	51조 1항	1년 //	500만원 //
	12조 19조 23조	폐기물 운반선 및 폐유처리 사업등의 신고	53조 2항		50만원 //
	15조 1항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 금지	49조 3항	5년 //	2,000만원 //
	16조	해양시설의 설치 등록	51조 2항	1년 //	500만원 //
	17조 1항	폐유처리 사업의 허가	49조 4항	5년 //	2,000만원 //
	20조	폐유의 인도의무	52조 3항		200만원 //
	22조 1항	폐유 처리 시설의 조업 정지	52조 4항		200만원 //
	22조 2항	폐유처리 사업의 조업 중지	49조 5항	5년 //	2,000만원 //
	25조 1항	자가 폐유 처리 시설	51조 3항	1년 //	500만원 //
	26조 1항 1호 2호	대량의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52조 5항		200만원 //
	26조 1항 3호	대량의 기름 배출 발견자의 신고의무	53조 3항		50만원 //
	27조 1항 2항	기름의 대량배출 경우의 응급조치 및 방제조치	49조 6항	5년 //	2,000만원 //
	27조 3항	기름 및 폐기물의 대량방출 경우의 방제조치 명령	49조 7항	5년 //	2,000만원 //
	29조 28조 1항	기름 방제자재의 비치	52조 6항		200만원 //

	36조	조정 위원의 의무	51조 4 항	1년이하	500만원이하
	38조	폐선의 규제	49조 8 항	5년 "	2,000만원 "
	40조 3 항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보고지시	53조 4 항		50만원 "
	42조	기름 기록부 사본의 제출	53조 5 항		50만원 "
	43조	선박의 정박, 견색, 나포 등의 명령이나 조치	50조	2년 "	1,000만원 "
2. 공유수 면 관리법	9조	유독물 또는 동물의 시체류를 버리는 행위의 금지	18조		10만원이하
3. 항만법	17조	유독물 또는 동물의 시체를 버리는 행위	43조		50만원이하
4. 어항법	6조	유독물 또는 동물의 시체를 버리거나, 토석을 버리거나 채취하는 행위, 수질을 오염시켜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29조		50만원이하

洋汚染防止條約이 採擇된 것이다.

그 條約의 主된 內容은 다음과 같다.

○船舶으로부터의 기름에 依한 汚染의 防止에  
關한 規則

○기름以外의 散積의 液體有害物質에 依한 汚染의 防止에 關한 規則

○包裝輸送된 有害物質에 依한 汚染의 防止에 關한 規則

○船舶으로부터의 먼지 類에 依한 汚染의 防止에 關한 規則

이러한 國際的 動向에 對備하여 우리나라도  
이에 對한 對處가 要望됨과 同時 海洋汚染防止  
法을 遵守하고 이를 發展시켜나갈 努力이 絶對  
적으로 必要할 것이다.

### 3. 海洋汚染防止의 今後

海洋汚染防止對策은 世界的의 規模로 生覺하  
지 않으면 안될 問題이며 以前부터 國際條約이  
締結되어 그 線에 따라 各國이 諸對策을 講究하  
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國聯의 活動이다. 1968年の 國聯總  
會에 提唱된 「國聯人間環境會議」는 3年餘의 準  
備期間을 거쳐 1972年 6月 스톡홀름에서 開  
催된 海洋汚染問題에 關하여도 國際的으로 協力  
可能한 最重要課題로서 取扱되었고 여러가지 議  
論이 交換되었다. 그리고 1972年 10月에는 그  
成果의 하나로서 런던에서 「1973年的 新しい 海